

지배구조 내부규범

소관부서 : 경영관리팀

제정 2016.10. 25.

개정 2019.03.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주와 투자자 등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
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과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및 개폐) 이 규범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다만 단순한
용어의 변경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구성현황

제3조(이사회의 구성) ①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
성한다.

- ②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회사는 1명 이상의 상임이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1명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④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03.27 신설>

제4조(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사외이사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및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③ 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회 활동의 조정자 역할
2. 대표이사와의 이사회안건 조정 및 협의
3.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 지원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5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 본 규범에서 이사라 함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말한다.

②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

다.

- ③ 상임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경우 비상임이사는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 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 ⑤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 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 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6조 (이사의 결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되지 못 한다.

- 1. 미성년자 · 파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 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 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 인가 · 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7.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7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관련법령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과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건전경영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③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지배구조법 제15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임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충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져도록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경영진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제9조(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④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임기 종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 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 그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10조(이사 퇴임의 기준과 절차)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직
3. 임기중 관련법령 및 정관, 규정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등 이사로서 신분

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특별결의한 경우

- ② 이사에 결원이 생겨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제5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1조(이사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분기 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른 이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② 각 이사는 의제와 이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까지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각 이사에게 발송(팩스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발송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재직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당해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3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 수준, 이사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및 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운영 및 이사 선임시 반영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되,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4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 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선임할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의 추천

2. 기타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6조(감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7조(위험관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지배구조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밖에 관련 법령, 정관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보수위원회)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사항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기타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절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제20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각 위원회는 매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및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과 위원회의 운영에 참고한다.
- ③ 제1항의 평가 방법 및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각 위원회가 정하되,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 제21조(임원의 범위)** ① 이 규범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 제22조(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임원 중 이사의 자격요건은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을 두루 갖춘 자로서 관련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회사의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제23조 (임원의 결격요건)** ① 이사인 임원의 결격요건은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되지 못한다.

제2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24조(임원의 권리와 책임) ① 이사인 임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사항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직무에 상응하는 전결권을 행사한다. 각 업무집행책임자별 전결권한은 전결규정으로 정한다.
- ③ 업무집행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

제2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인 임원의 선임은 제9조(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은 대표이사의 임용결정에 따르며 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 ③ 이사인 임원의 임기는 제9조에 따른다.
- ④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하거나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책임자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퇴임) ① 이사인 임원의 퇴임은 제 10조(이사 퇴임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 ②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25조(임원의 선임) 제2항에 따른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

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임용계약, 정관 및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2.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4. 관련 법령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회사가 업무집행책임자와의 위임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6. 기타 회사와 업무집행책임자와의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③ 업무집행책임자의 유고 시 대표이사가 정한 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회사는 제 25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27조(임원에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임원의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임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준법감시,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다만 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된 경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재직 경력 등 업무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

제28조(임원 후보자의 선정과 교육) ①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는 임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며,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로 추천한다. 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후보로 추천한다.

②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 후보군은 조직 내에서 관련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직급 및 직무에 있는 자들로 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임원후보자의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④ 회사는 정기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후보자의 임원 임면에 참고한다. 다만 필요 시 별도의 임원적합성 평가 등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29조(임원 성과평가) ① 임원의 성과(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를 적용한다.

- ② 임원의 보수체계는 보수위원회에서 확정하되, 수익성 등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고 장기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수의 지급 결정 시에 활용한다.
- ③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수의 지급, 재선임 결정 시에 활용한다.
-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 결과는 보수의 지급 또는 재선임 시에 활용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 등으로 한다.

- ②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본급, 성과급의 한도 및 지급 기준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31조(정의) 본 규범에서 말하는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32조(경영승계 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될 경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 각 후보의 강점 등과 관련하여 심층 면접 및 추가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역할 및 요구된 역량의 보유 수준을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② 이사회는 최종 후보자 중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를 선발하되, 이를 위하여 신규 이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 등 이사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제33조(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승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4조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① 경영승계 절차 개시사유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사임, 유고 등으로 한다.

②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의 퇴임 시에는 임기만료 전 30일 이전부터, 사임 및 유고 시는 해당 사유 발생 즉시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전항에 따라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임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

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비상상황 시 승계절차) ①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② 최고경영자가 사고, 건강상 사유,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의 중징계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을 선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서 정한 비상상황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선임을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선임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36조(경영승계 지원부서)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 담당부서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제3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37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 후보군은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38조(최고경영자의 후보군) 최고경영자의 내부 후보군은 회사와 계열회사의 최고경영자, 핵심포지션 담당임원 중에서 선발하며, 외부 후보군은 금융산업 경력보유자로서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39조(후보군 선발, 검증 및 승인) ①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에 관한 업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 및 자격검증 등 다음 각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 사내추천, 기관투자자, 외부 자문기관 등의 추천을 활용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및 발굴
2. 예비후보군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검증
3. 회사 최고경영자 및 외부 자문기관 의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예비 후보군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최종 후보군을 승인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를 포함한다)는 위 검증 과정에서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속한 자와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이 회사와 거래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④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탐색, 발굴 및 관리 상황을 보고한다.

제5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40조(공시)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6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1조(최고경영자의 선임)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내로 이사회에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며, 그 절차는 제9조를 따른다.

제42조(최고경영자의 해임 및 퇴임) 최고경영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사 퇴임의 기준을 따른다.

제43조(최고경영자의 책임과 권한)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최고경영자의 전결권한은 전결규정으로 정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한을 최고경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최고경영자는 주요 현안과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가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최고경영자는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책임을 진다.

제44조(최고경영자의 평가기준 및 절차) 최고경영자의 평가기준 및 절차는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